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가단139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일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대근

변론 종결2023. 4. 6.

판결 선고2023.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3,5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2023.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1,207,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이 사건 2023.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망 D(E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8. 22. 아들인 F와 G, 딸인 원고들과 H를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다. I와 피고는 F의 아들로 망인의 손자이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등

- 1) 망인은 1987. 1. 12. 분할전 의정부시 J 임야 2,876㎡ 및 분할전 의정부시 K 임야 4,333㎡를 피고와 G, I에게 각 1/3 지분씩 증여하고, 1987. 1. 1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분할전 J 토지는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제2 토지 내지 제5 토지'라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전 K 토지는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제2, 3 토지가 되었다.
- 2) 망인은 2018. 12. 20. 소외 L에게 남양주시 M 건물 제4층 N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9. 1. 25. 그 매도대금 중 60,273,863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3) 망인은 2020.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인 2021. 8. 22. 및 감정시행일인 2022. 12. 14. 기준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2022. 12. 14. 기준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4. 6. 현재의 시가와

동일하다.

1	이 사건 제1 토지(J, O)	649,976,0001) 분할전 면적인 2,876㎡ 기준 가액. 226,000원 × 2,876㎡ ²	684,488,0002) 분할전 면적인 2,876㎡ 기준 가액. 238,000원 × 2,876㎡ ²
2	이 사건 제2 토지(P)	40,788,000	42,768,000
3	이 사건 제3 토지(Q)	886,411,000	928,421,000
4	이 사건 제4 토지(R)	253,407,000	265,474,000
5	이 사건 제5 토지(S)	25,410,000	26,620,000
합계	1,855,992,000	1,947,771,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U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2022. 10.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금원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101,207,58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2,937,243원(예금채권) 【인정근거】 U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2022. 10. 11.)

2) 증여액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 3 토지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1987년경 행해졌는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증여가 행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 당시 유류분권리자가 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1987. 1. 12. 당시 이 사건 제4, 5 토지나 이 사건 건물은 망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었는바(해당 재산들은 망인의 배우자인 V가 사망한 2017. 11. 5. 망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사실상 이 사건 제1, 2, 3 토지가 망인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딸들은 배제하고 차남인 G와 장남 F의 아들인 I 및 피고에게만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증여하였다.

③ 피고는 W 생으로 위 증여계약 당시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는바, 피고의 가해 인식 여부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부친인 F은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의 재산상태와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피고에 대한 증여와 동시에 이루어진 I에 대한 1/3 지분의 증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G에 대한 1/3 지분의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서 가해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이 사건 제1, 2, 3 토지 전체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4, 5 토지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4, 5 토지의 증여에는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손자인 피고가 망인과 함께 살면서 망인을 돌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 5 토지의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피고는 이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토지의 각 1/3 지분을 증여받았고,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525,725,000원(= 1,577,175,000원 × 1/3 지분)에 이른다. 그 외에도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유학자금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제4, 5 토지의 증여마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경우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② 피고가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부양과 이 사건 제4, 5토지의 증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4, 5 토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금원 60,273,863원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 60,273,863원에 관하여도 피고의 수증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X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 35,273,863원의 변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7,865,580원의 납부와 망인의 부양료 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수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

나) 산입할 증여액: 이 사건 각 토지 가액 합계 1,855,992,000원

3) 상속채무액: 없음(다툼 없음)

4) 소결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1,858,929,243원 (= 적극적 상속재산액

2,937,243원 + 증여액 1,855,992,000원)이 된다.

다.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인데(민법 제1112조 제1호),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과 F, H, G의 법정상속분은 공히 1/5이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0(= 1/5 × 1/2)이 되고, 유류분액은 각 185,892,924원(= 1,858,929,243원 × 1/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라.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당해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다툼 없음).

마.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한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는 G이 유일한바,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 2,937,243원에 G의 특별수익인 증여의 가액 525,725,000원(= 1,577,175,000원 × 1/3 지분)을 가산한 간주상속재산은 528,662,243원(= 2,937,243원 + 525,725,000원)이 되는바, G이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G은 특별수익을 제외하고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각 순상속분액은 734,310원(= 2,937,243원 × 1/4)이 된다.

바. 유류분 부족액[(A×B) - (C + D)]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또는 초과액 계산 결과는 아래표 기재와 같다.

[금액 단위: 원]

1	원고 A	185,892,924	0	734,310	185,158,614
2	원고 B	185,892,924	0	734,310	185,158,614
3	F	185,892,924	0	734,310	185,158,614
4	H	185,892,924	0	734,310	185,158,614

1	원고 A	185,892,924	0	734,310	185,158,614
5	G	185,892,924	525,725,000	0	-339,832,076

사. 유류분 반환의무자별 분담비율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피고와 G, I의 분담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금액 단위: 원]

G	525,725,000	185,892,924	339,832,076	339,832,076/1,670,099,076
피고	804,542,000	0	804,542,000	804,542,000/1,670,099,076
I	525,725,000	0	525,725,000	525,725,000/1,670,099,076
합계(④)	1,670,099,076			

아.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반환금액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액반환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유류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수증재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843,986,333원[= {(684,488,000원 + 42,768,000원 + 928,421,000원) × 1/3 지분} + 265,474,000원 + 26,620,000원)이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유류분 반환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85,158,614	804,542,000/1,670,099,076	89,197,032	89,197,032/804,542,000	93,570,1003) =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843,986,333원 × 89,197,032/804,542,000
-------------	---------------------------	------------	------------------------	--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각 93,5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로써 유류분 반환의무의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날인 2022.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지영

별지

- 1) 분할전 면적인 2,876㎡ 기준 가액. 226,000원 × 2,876㎡
- 2) 분할전 면적인 2,876㎡ 기준 가액. 238,000원 × 2,876㎡
- 3) =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843,986,333원 × 89,197,032/804,542,000